

세외수입 사업별 설명서

부 서	의약과
담당자	이경환 (☎6412)

- 세외수입 명칭** : 의료법, 약사법 및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자 과징금, 과태료 등

- 수입의 목적 및 근거**
 - 의료법 제67조 및 제92조
 - 약사법 제81조 및 제98조
 -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46조 및 제69조

- 부과기준일** :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자 등

- 부과권자(권한, 내부위임관계 표시)**
 - 중구보건소장

- 수입금의 귀속(배분)**
 - 중구청

- 년도별 징수실적**

(단위 : 천원)

2012년도		2013년도		2014년도		2015년 7월	
부과	징수	부과	징수	부과	징수	부과	징수
60,700	59,700	90,800	90,800	6,340	6,340	7,980	7,980

- 세외수입 인상내역(인상시기, 요율 등을 기록)
 - 인상내역 없음.

- 향후 징수전망**
 - 업소의 법규위반율이 감소하는 추세이며, 경기악화로 인해 업무 정지에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.

※ 작성방법

- 가) 세외수입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서식은 변경사용이 가능
- 나) 예산서의 세외수입 부기사항 건별(우리은행출장소, 구내이발관, 구민회관식당 등)로 각각 작성